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17. 3.



[목 차]

I . 개요	1
① 앱 생태계 개요	1
② 용어 정의	1
③ 기본 원칙	3
II . 적용범위	5
① 스마트폰의 범위	5
②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5
③ 정보와 기능의 범위	6
④ 적용 시기	7
III .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8
① 앱 서비스 제공자	8
② 운영체제 공급자	14
③ 스마트폰 제조업자	16
④ 앱 개발자	16
⑤ 앱 마켓 사업자	16
IV .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17
①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17
② 접근권한 동의 여부 선택	19
③ 접근권한의 철회	21
V . 관련 규정	24

〈 추진 배경 〉

-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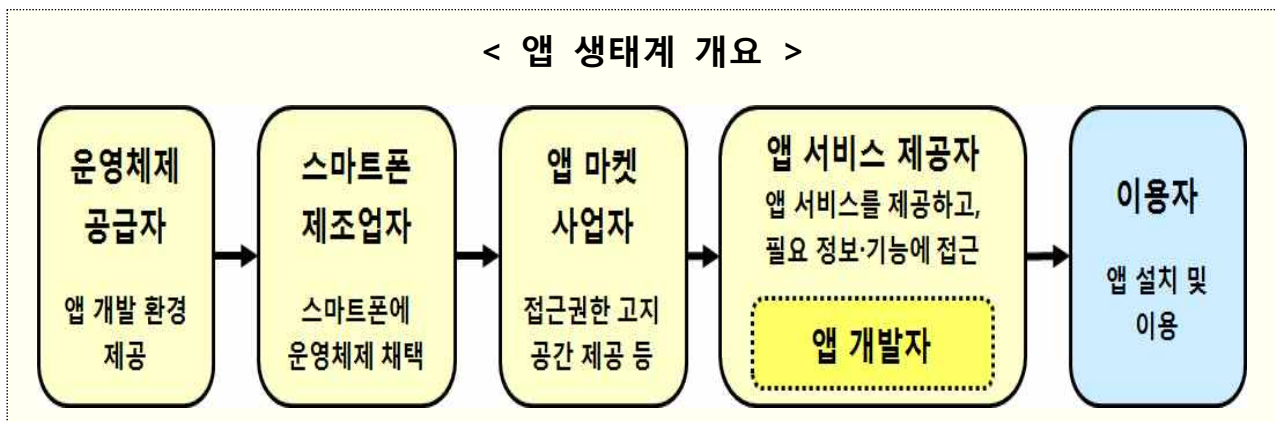
특히, 과거 이러한 앱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발생

(사례1) 일부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 앱을 제공한 사업자가 앱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

(사례2) 안전사고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앱에서 신고 기능과 무관하게 통화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접근권한을 요구

- ◇ 이에 지난 '16.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17. 3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되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 본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
 - ※ '15. 8.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본 안내서로 대체
- ◇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한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안내서를 적용하고자 함

-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단말장치에서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 ①앱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인 운영체제, ②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 ③앱을 등록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 ④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앱 서비스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해야 함
-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앱 생태계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체계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 앱* :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뜻함

* 네이버 앱, 카카오톡 앱, 티맵 앱, 고속도로교통정보 앱 등

- **운영체제 공급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하 '운영체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를 뜻함

* 구글(안드로이드OS), 애플(iOS),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즈OS), 삼성전자(타이젠) 등

- **스마트폰 제조업자***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뜻함

*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화웨이 등

- **앱 마켓 사업자*** :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사업자

*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스토어), KT·LG유플러스·원스토어(원스토어), 삼성(갤럭시 앱스) 등

- **앱 서비스 제공자*** : 앱을 앱 마켓에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뜻하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동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본 안내서상의 앱 서비스 제공자로 봄

* 네이버, 카카오, SKT, 한국도로공사 등

※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됨

- **앱 개발자** : 스마트폰의 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를 뜻함

① 앱 서비스 제공자

- 앱이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을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해야 함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하 '필수적 접근권한')과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접근권한(이하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한 후,
 - 이용자로부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내 정보·기능에 접근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벌, 행정벌**을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처분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②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개발자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 이미 이용자가 동의한 접근권한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개발자는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앱 마켓 사업자

- 접근권한과 관련한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운영해야 함

④ 이용자

- 필수적 접근권한 및 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접근권한의 허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 후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앱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권한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고

II. 적용범위

1 스마트폰의 범위

-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에 적용 (이하 '스마트폰')
- 2G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경우, 사실상 앱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자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스마트워치는 화면 크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동의 기능을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권장
다만, 고지·동의 기능이 구현된 기기가 제조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동일하게 적용

2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으로 함
- 앱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제 하에서 스마트폰 내에서만 동작하는 경우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해당 정보와 기능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의 대상에서 제외
- *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와 정보 송수신이 없는 계산기 앱, 시계 앱, 캘린더 앱 등

- 또한, 스마트폰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앱 (선탭재앱)이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기능 (통신, 촬영, 영상 및 음악 재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권한도 동의 대상에서 제외

☞ 전화통화 앱, 메시지 앱, 사진촬영 앱, 인터넷 연결 앱, 연락처 앱 또는 앱 스토어 등의 선탭재앱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진촬영 앱이 연락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인 기능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 대상인 접근권한의 범위에 해당됨

3 정보와 기능의 범위

- o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OS (구글)와 iOS (애플) 등이 동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접근권한의 범주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 통제가 필요한 범위로 설정

- (이용자 저장 정보*)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장한 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설사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 (자동 저장 정보*) 스마트폰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입력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추적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 (단말장치 식별 고유정보*)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식별할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도 식별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1:1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IMEI) 및 MAC 주소 등

- (입력·출력 기능) 스마트폰의 기능에 접근·동작하여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영상촬영 기능, 음성인식 기능,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기능 등

4 적용 시기

- o 본 안내서는 '17. 3. 23일 이후 스마트폰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
- o 또한,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17. 3. 23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고 '17. 3. 23일 이후에 갱신 (업데이트)한 경우에도 적용

☞ '갱신'이라 함은 접근권한의 변경뿐만 아니라 앱의 성능·기능 개선, 오류(버그) 수정, 이용자 사용환경(UI/UX) 변경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접근권한의 변경 없이 단순히 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은 갱신으로 보지 않음

- o 다만, '17. 3. 23일 당시 제조 중인 스마트폰으로서 '17. 3. 23일 이전에 운영체제를 이미 결정하여 제조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Ⅲ.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1 앱 서비스 제공자

- ◇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 ①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③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①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

-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함
 -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상기 ①, ②와 함께 ③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해당 접근권한이 필수적인지, 선택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함
 - 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접근권한 고지 시 별도 안내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되,

-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

②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설령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

③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으로서 해당 서비스와의 기술적 관련성이 존재해야 함

② 고지 방법 및 절차

- o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앱 안내정보 화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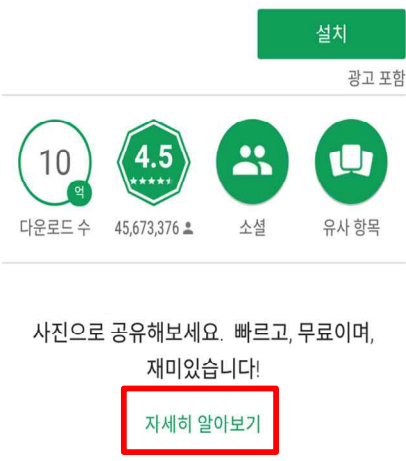
가. 이용자가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앱의 경우

- o (앱 설치 시) 이용자가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 (구글 플레이)’, ‘설명→더보기 (애플 앱스토어)’ 또는 ‘설명 또는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 (윈스토어)’란 등에 상기 고지 내용을 알림

*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경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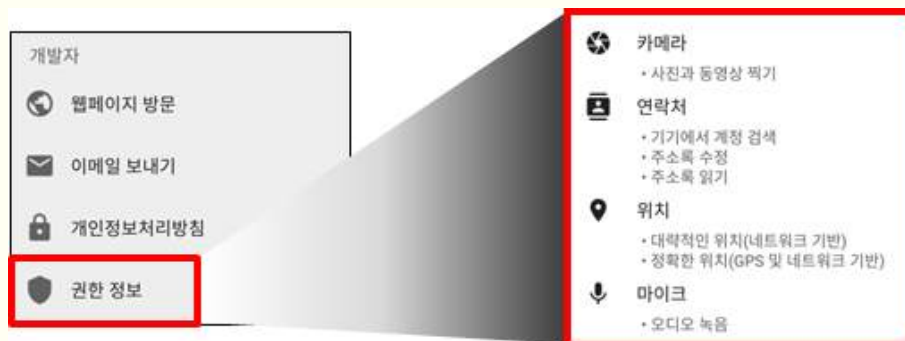
☞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의 경우, 앱 실행 시 접근권한에 대해 개별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여 고지해야 함

[그림 1]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음악 앱)

1단계	2단계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필수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저장 권한</td> <td>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td> </tr> <tr> <td>전화 권한</td> <td>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td> </tr> <tr> <td>SMS 권한</td> <td>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td> </tr> </tbody> </table> [선택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권한</td> <td>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td> </tr> </tbody> </table> ※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그림 2] 본 안내서의 접근권한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현재 각 운영체제별로 기본 설정(Default) 값으로 제공하는 '권한정보'의 접근 권한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간단한 설명은 접근권한의 항목, 이유 등의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앱 실행 시)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여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팝업 창 등을 통해 상기 고지 내용을 먼저 알려서 확인하게 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그림 3] 앱 실행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음악 앱)

1단계 (고지)	2단계 (동의)
[필수적 접근권한] ▪ 저장 권한 :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을 위해 접근이 필요합니다. 000 사용을 위해 다음 권한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000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저장 권한 사용 거부 허용

☞ iOS 10.0 버전에서는 단일의 팝업 창에서 고지 내용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는데,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경우 이 역시 본 안내서에 따른 고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설치 시 또는 앱 실행 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게 되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앱 실행 시에만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한 번 고지 후 소멸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앱 설치 시에만 앱 마켓에서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팝업 창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나. 선택재앱의 경우

- 선택재 앱의 경우,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함

① 해당 앱의 최초 실행 화면에서 고지하는 방법

② 운영체제 최초 구동 화면에서 고지하고 운영체제별 설정 화면 또는 앱에 별도 메뉴를 개설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근권한의 고지 내용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동의 방법 및 절차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체제별로 제공하는 앱 개발환경에 맞게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여야 함

< 주의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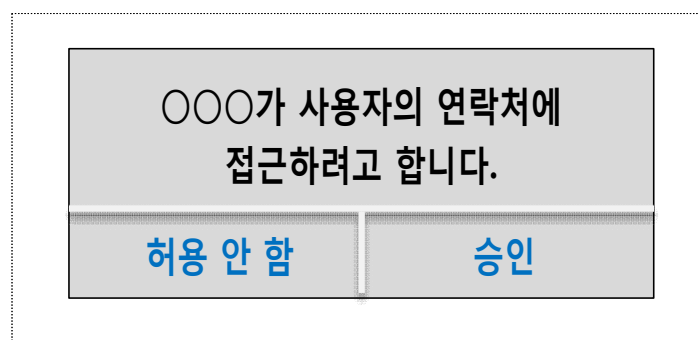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는 아니므로, 만약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앱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경우에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가.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 애플의 iOS

- 앱의 실행 시점이 아니라 앱에서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구현

[그림 4]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에 맞추어 접근권한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 앱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없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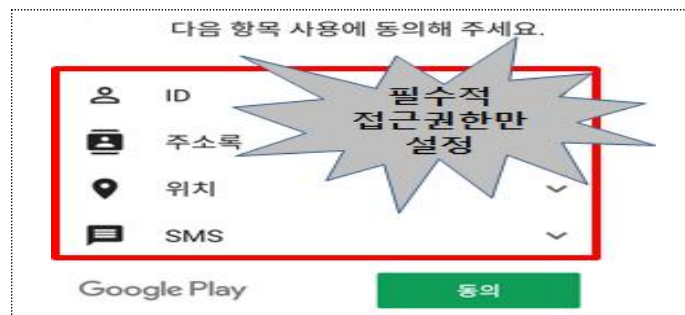
따라서, 앱 서비스 제공자는 ①'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②이용자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6.0 버전부터 동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해당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6.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기존 앱에서 동의한 접근권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야 함

나.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

- 해당 운영체제에서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앱의 접근권한을 설정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고, 앱을 설치할 때 해당 권한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구현

[그림 5] 개별 동의가 불가능한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이용자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현해야 하며, 사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앱이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① 동의 기능 제공

- 운영체제 공급자는 앱 개발자가 접근권한별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따른 앱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함
-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접근권한은 6~7쪽의 정보와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포함되도록 함

☞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을 때 동의를 받는 창에 해당 접근권한이 필수적 접근권한인지, 선택적 접근권한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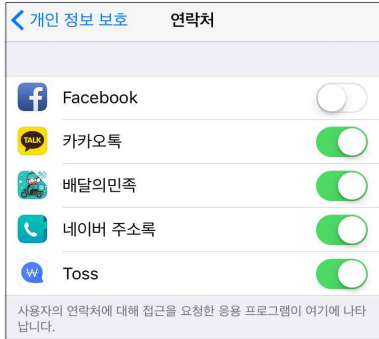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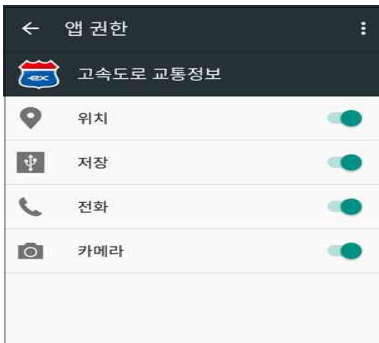
② 동의철회 기능 제공

- 운영체제 공급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접근권한에 대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통하여 제공해야 함

☞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앱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경우라면 동의 철회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앱 서비스 제공자는 사후에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함

[그림 6] 운영체제별 동의 철회 기능 예시

구분	동의 철회 기능 1 (앱별 철회)	동의 철회 기능 2 (접근권한별 철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6.0 이상 버전)		
안드로이드폰 (6.0 미만 버전)	○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한 경우) 해당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경우라면 동의 철회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선택적 접근권한 설정 기능을 앱 자체에서 구현한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	

③ 접근권한 운영 기준 공개 및 보안조치

- 운영체제에서 상기 동의·철회 기능을 제공하는 사실과 함께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운영기준*을 앱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해야 함

* 연락처·일정 등 접근권한별 해당 정보와 기능에 대한 명세

- 본 안내서의 내용을 운영체제별 개발자 사용 화면 등을 통해 홍보 필요
- 또한, 앱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응용프로그램 규격(API) 등의 개발환경이나 도구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3

스마트폰 제조업자

- 스마트폰 제조업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서에 따른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야 함

4

앱 개발자

- 앱 개발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서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스마트폰과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을 구현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향후 제공 예정인 서비스를 위해 미리 접근권한을 설정해서는 안 됨

5

앱 마켓 사업자

- (접근권한 고지 공간·환경 제공) 앱 마켓 사업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마켓에 앱 등록 시, 접근권한 관련 고지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앱 개발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접근권한 검수 절차 운영) 앱 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에 대한 자체적인 검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된 앱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내하여 개선요청, 삭제조치 등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앱 서비스 제공자 대상 홍보) 본 안내서의 내용을 앱 마켓상 앱 등록 화면 등을 통해 홍보

IV.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 ◇ 이용자는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이용자는 앱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권한을 사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고할 수 있음

1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 이용자는 앱에 따라 ①앱 설치 시 앱 안내정보 화면을 통해 또는 ②앱 실행 시 별도 화면을 통해,
 - 해당 앱에서 접근권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보와 기능의 항목, 그 항목이 필요한 이유, 그 항목이 필수적 접근권한인지 선택적 접근권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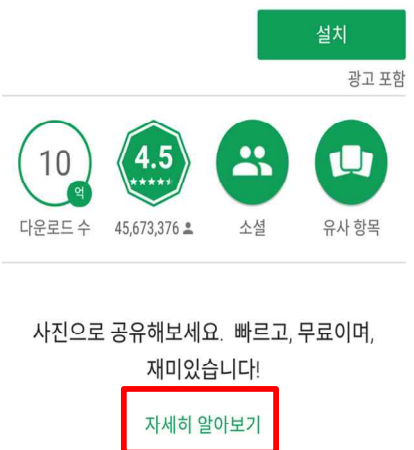
※ 앱에 따라 ①, ②의 방법이 모두 구현되거나 하나의 방법만 구현된 경우가 있음

① 앱 설치 시

-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설치하려는 앱을 검색한 후, '자세히 알아보기 (구글 플레이)', '설명→더보기 (애플 앱스토어)' 또는 '설명 또는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 (윈스토어)'란 등에서 상기 고지 내용을 확인

*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경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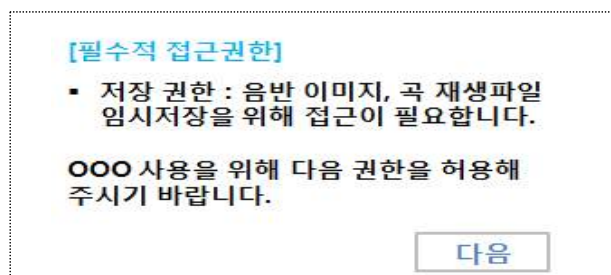
[그림 7]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방법

1단계	2단계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필수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이유</th></tr> </thead> <tbody> <tr> <td>저장 권한</td><td>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td></tr> <tr> <td>전화 권한</td><td>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td></tr> <tr> <td>SMS 권한</td><td>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td></tr> </tbody> </table> [선택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이유</th></tr> </thead> <tbody> <tr> <td>위치 권한</td><td>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td></tr> </tbody> </table> ※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② 앱 실행 시

- 이용자는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고자 할 때, 팝업 창 등을 통해 앱이 접근하려는 정보와 기능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8]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방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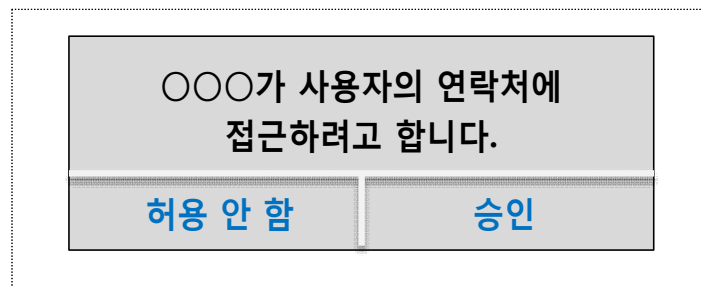
접근권한 동의 여부 선택

①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및 아이폰

- 이용자는 해당 앱이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해당 정보와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됨

[그림 9]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해당 앱에서 설정한 접근권한이 필수적 접근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앱에서 설정한 접근권한이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접근권한의 허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앱이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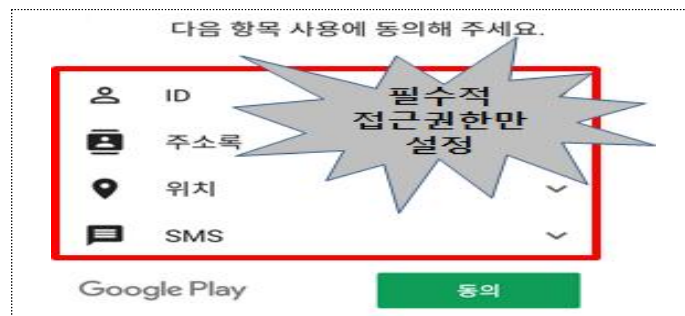
다만, 이 경우에 이용자는 '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 구현되어 있는 접근권한 동의 철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②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

-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앱을 설치할 때 앱 설치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면 됨

[그림 11]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이러한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됨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에 맞추어 접근권한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한 정보와 기능일지라도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는 위 그림과 같이 필수적 접근권한인 것처럼 표시되고, 해당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음

따라서, 이용자는 ①'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서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②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된 정보와 기능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앱의 설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용자는 ①자신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6.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후, ②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기존 앱에서 동의한 접근권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하는 것이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3

접근권한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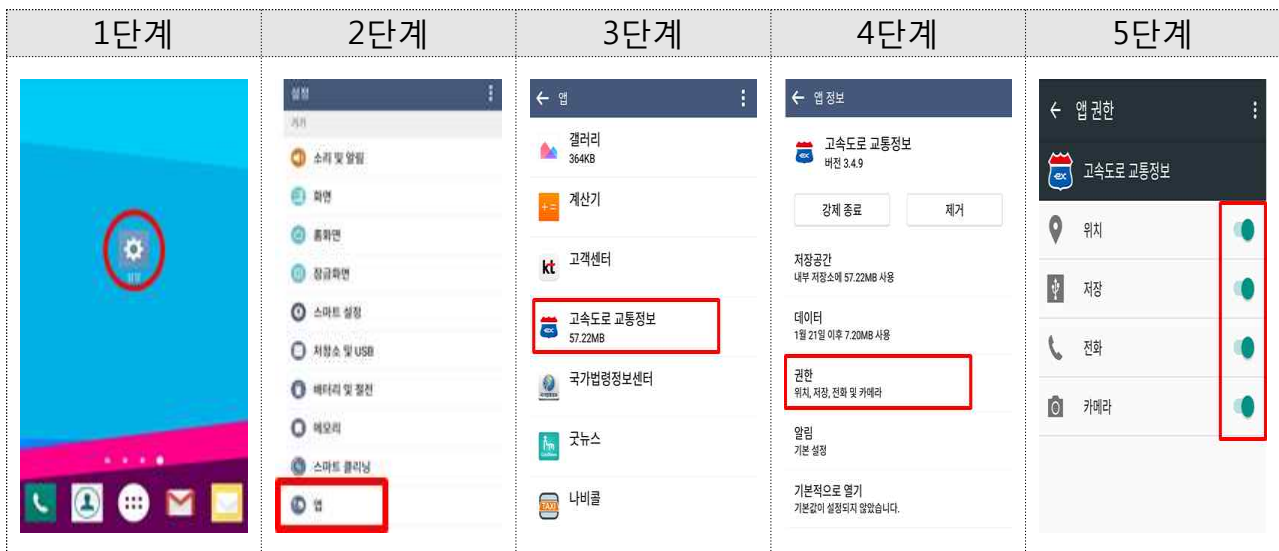
①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이용자는 접근권한에 이미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앱별·접근권한별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각 앱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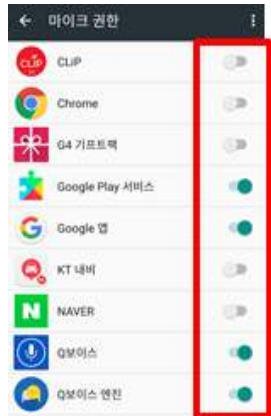
※ 다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 (앱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앱' → ③ 해당 앱 선택 → ④ 권한 선택 → ⑤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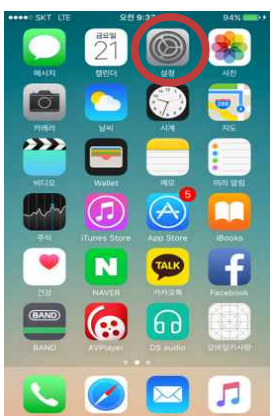


- (접근권한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앱' → ③ ':' (설정 및 제어) → ④ '앱 설정' → ⑤ '앱 권한' → ⑥ 해당 접근권한 선택 → ⑦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나. 아이폰

- o (앱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해당 앱 선택
→ ④ 접근 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접근권한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해당 접근권한 선택 → ④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②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접근권한별 거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러한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하면 됨
- 이러한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주의 > 개인정보 삭제 시 추가 조치 사항

- 앱 삭제만으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탈퇴 등 별도 조치**가 필요

V. 관련 규정

1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나. 법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의2	1,000	2,000	3,000
푸.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2호	3,000	3,000	3,000
		1,000	1,000	1,000
		300	300	300